

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

서울시 거주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대출!



(기준일자 : 2021.12.23현재 / 금리:연)

대출대상	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③ 본인 연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,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손님 ④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손님 ⑤ 서울특별시 용자추천을 받은 손님 [서울주거포털(http://housing.seoul.go.kr) 사이트를 통해 신청]														
대상주택	공부상(등기부등본 등)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(단, 공공임대주택, 장기안심주택, 다중주택 제외)														
신청기간	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(갱신계약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)														
대출한도	최대 7천만원 (임차보증금*의 90% 이내)														
대출금리	연 2.390%* (기준 : 2021.12.23 현재, 내부신용(ASS) 1~12등급, 대출기간 2년, 대출금액 7천만원) [기준금리 0.940%(신잔액 COFIX 6개월물) + 협약가산금리 1.450%] * 손님이 부담하는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아래의 서울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입니다. - 적용금리가 1% 미만 시,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해 최저금리 1%가 적용 됩니다. 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%입니다. - 연체이자율[대출이자율+연체가산이자율(연3%)] : 최고 연 15%입니다.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이자의 부과시기: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.														
이차보전 (서울시 이차보전)	최대 연 2.00% (이자지원 중단사유 발생시 원래의 대출금리로 환원되며,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.) ※ 서울시 이차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(http://housing.seoul.go.kr)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	
대출기간	6개월이상 2년이내 (단,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)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. 단, 만 39세를 유지하는 날까지 한정														
담보	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														
상환방식	만기일시상환(일시대출)														
중도상환 해약금	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0.7% X (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÷ 중도상환약정기간)으로 하며,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(기한연장 포함)까지 적용합니다. (단,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)														
대출비용	- 대출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세를 부담합니다.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대출금액</th> <th rowspan="2">인지세</th> <th colspan="2">인지세 부담</th> </tr> <tr> <th>손님 부담</th> <th>은행 부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천만원이하</td> <td>비과세</td> <td>없음</td> <td>없음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</td> <td>70,000원</td> <td>35,000원</td> <td>35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- 보증료 (손님 부담) :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.</p>	대출금액	인지세	인지세 부담		손님 부담	은행 부담	5천만원이하	비과세	없음	없음	5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	70,000원	35,000원	35,000원
대출금액	인지세			인지세 부담											
		손님 부담	은행 부담												
5천만원이하	비과세	없음	없음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	70,000원	35,000원	35,000원												

제출서류	<p>용자추천서,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(원본)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영수증, 소득 및 재직(사업) 증명서류 등 (상당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)</p>
금리인하 요구권	<p>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.</p>
대출계약 철회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-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'법 위반사실을 안 날'부터 1년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.)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,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.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입주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※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, 신용도, 주택보유수, 보유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※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(신잔액 COFIX 6개월물)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차보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※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,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※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,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/신용상의 불이익(압류, 경매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※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 ※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※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(https://www.kebhana.com/)를 참조하시거나, 하나은행 고객센터(1599-2222)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 ※ 본 홍보물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